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

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윤관석・양향자・정성호

박홍근 · 강병원 · 송영길

변재일 · 신동근 · 김철민

임종성 · 김상희 · 백혜련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주체가 건설·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받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음.

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질 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또한,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으로 건설·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제외함(안 제57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항 신설).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사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 조제8호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)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 -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설·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
- 나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·공급하는 주택 제6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안 혂 제57조(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제57조(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. 1. ~3. (생략) 1. ~3. (현행과 같음) 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 <신 설> 택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 사업의 시행자(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8호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 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 한다)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설 · 공급 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

③ ~ ⑦ (생 략)
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)① ~ ⑥ (생 략)
<<u><신 설></u>

- 나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
 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
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
 정비사업으로 건설・공급
 하는 주택
- 하는 주택
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 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)① ~ ⑥ (현행과 같음)
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